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람	기 관 의 장

공보

제 710 호 2011. 10. 4(화)

공 고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94호[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2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603호[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회람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5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법률 제10389호, 2011. 7.24)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 업체의 평가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근무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 평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평가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5조)
다.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규정 (안 제6조~제10조)
마.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반영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1조~제13조)
바. 우수업체 포상등에 관한 사항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10.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환경미화과장, 전화:052-219-7382, FAX:052-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03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관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91. 4. 23일에 책정된 이후 20년간 인상하지 않았고, 최근 市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10.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市 일괄추진)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조례(안) 별표〕

가. 수거식 화상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052-219-7372), FAX(052-219-737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